

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08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 구성을 위해 당연직 위원의 직위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
-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의 직위를 명문화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- 1) 당연직 위원의 직위와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명시

나. 위원회의 간사(안 제8조)

- 1) 간사의 직위 명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사항 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(3쪽)
- 2) 입법예고 : 2008. 7. 25 ~ 8. 13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관련법 발췌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: (4쪽)

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.

같은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회계과장, 관광과장, 속초발전추진단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,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제8조중 “담당부서 주무담당”을 “예산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전문분야 종사자 등 6인 이내로 한다.</u>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 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담당부서 주무담당</u> 이 된다.	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회계과장, 관광과장, 속초발전추진단장이 되고,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,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제8조(간사) _____ _____예산업무담당 -----.

관련법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[2008.07.15 조례 제2145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“용역”이라 함은 시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·연구·계획·조사·평가·시험·설계·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전문분야 종사자 등 6인 이내로 한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②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, 품위손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.
③ 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
2. 용역사업비의 적정성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심의대상)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. 다만, 「[건설기술관리법](#)」의 [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](#)은 제외한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담당부서 주무담당이 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,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결과조치 등)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,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용역결과 관리)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,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속초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